

제 3 절 별정통신서비스

이 주 영*

• 목 차 •

1. 제도분석	34
2. 사업자 및 시장동향	35
3. 향후전망	36

1. 제도 분석

1997년 2월 우리나라를 포함한 69개 WTO 회원국의 정보통신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기본통신 협정 합의로 시작된 별정통신사업은, 1998년 1월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후 KT, LG데이콤 등의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시작으로 개시되었다. 1999년에는 외국사업자가 일부 제한된 형태로 별정통신사업에 진입해 있었고 2001년 외국사업자 지분제한이 폐지되었다.

별정통신사업의 도입배경은 틈새시장 육성을 통한 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쟁 확대로 이용자 편익증진 및 국내통신산업 경쟁력 강화이며, WTO 기본통신협상의 결과인 음성채 판매업 개방에 대비하는 한편, 국내시장을 육성하는 先 국내경쟁, 後 시장개방원칙을 준수하기 위함이며, 국내통신망의 고도화 촉진을 위함이다. 별정통신사업의 장점인 상대적으로 용이한 시장 진입은 다수 사업자의 경쟁체제와 요금인하 등의 긍정적 효과 이외에도,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임대하여 사용하므로 통신망 이용률이 향상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여 망보유 사업자의 경영효율성이 증대시키는 간접효과를 얻게 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3항⁶⁾에서는 별정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및 전기통신설비 설치 및 이용을 통해 국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 방송통신정책연구실 연구원, (02) 570-4164, juyoungy@kisdi.re.kr(유선통신서비스)

6)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역무의 추가 및 許可의 변경)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외의 다른 기간통신역무를 추가하여 제공하고자 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의 3에 의하면 별정통신업무는 크게 재판매와 구내통신으로 나누어진다. 구내통신의 경우는 3호로 분류되고, 재판매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설비보유 여부에 따라 1호와 2호로 사업자를 구분한다. 한편 별정 2호에는 재판매 뿐 아니라 재과금, 가입자 모집 등이 포함된다.

〈표 1-17〉 통신사업자 분류

구분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1호	2호	3호	
정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재과금 가입자모집 무선재판매 인터넷폰*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제공 서비스	전화(시내·외, 국제) 업무 가입전신업무 전기통신회선설비대역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업무	음성재판매 인터넷폰* 콜백서비스	재과금 가입자모집 무선재판매 인터넷폰*	구내통신	부가통신업무(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업무 이외의 업무)

주: 별정1호 및 2호는 교환기 보유 유무로 판단함

기간통신사업자는 타 기간통신 사업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별정통신사업의 겸업이 가능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는 별정통신사업 등록대상을 ‘법인’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기간통신사업자도 별정통신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법인과 동일하게 등록할 수 있다. 사업법 제24조는 별정통신사업 결격사유로 기간통신사업자의 별정통신사업 진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률이 규정한 별정통신사업 범위내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진출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회사는 본체인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등록 후 별정통신사업 수행이 가능하며, 기간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허가받지 않은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별정통신사업이 아니므로, 법 제10조⁷⁾에 의하여 업무추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사업자 및 시장 동향

2006년 6월말 기준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517개(서울청 433개사, 부산청

7)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업무의 추가 및 許可의 변경)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통신업무외의 다른 기간통신역무를 추가하여 제공하고자 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30개사, 경북청 19개사, 충청청 16개사, 전남청 3개사, 전북청 14개사, 강원청 2개사)이며, 과거 별정통신사업자 증가추이는 1998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였고, 2003년에 감소 추세를 나타내다가 2004년부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8년 별정통신서비스 시장은 2007년 대비 5.4% 증가한 2조 2,48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집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제도 시행과 긴급 통화 서비스 제공은 별정통신사업자에 의한 인터넷 전화시장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8〉 별정통신서비스 현황 및 전망

(단위: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별정통신서비스	19,469	18,872	19,891	21,325	22,482	22,987
성장률	34.27%	-3.07%	5.40%	7.21%	5.43%	2.25%

자료: 2007년까지는 KAIT, 2008년 이후는 KISDI 전망

3. 향후 전망

2009년 별정통신서비스 시장은 전년대비 2.3% 증가한 2조 2,98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가 2008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전화 시장이 활성화되어 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별정통신 서비스 사업자의 참여가 두드러지는 등 별정통신 서비스 시장 확대가 예상되나 경기침체에 따라 성장률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침체에 따라 대부분 3억미만의 영세업자로 구성된 별정통신사업자들의 수익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국 약 500여개의 별정통신사업체중 470여개가 자본금 3억미만의 영세업자로 경기침체로 인해 진입과 퇴출이 용이한 별정통신서비스 산업 성장의 정체 혹은 침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어 성장률이 2008년에 비해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정보통신산업협회(<http://www.kait.or.kr>)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ic.or.kr>)
전자신문 각호
디지털타임즈 각호
각사 IR자료